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인 사업자 경쟁유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명시하려 함.

나. 주요내용

-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삭제
(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31.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의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인 사업자 경쟁유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명시하려 함.

3. 주요내용

-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삭제
(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삼아 해당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자 경쟁 유인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정착을 추진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문 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부분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소비자 권익 제한이 유발되지 않도록 함.
- 안 제7조(구성)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 구현

2015년 4월 30일(목) 09:00 배포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5년 5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김오식(044-200-4662)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30일(목) 낮 12시

담당: 이시완 사무관(044-200-4664)

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 개선 필요성

- 건설 산업 조례는 타 지역 건설 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 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 기회를 사실상 차단함.

* 이번 개선 대상 조례는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공사 관련 규제로서 지역 중소 전문 건설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임.

- 시장 진입의 차단으로 인해 공사 수주를 위한 폐이퍼 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 건설 업체 인수 등 우회 진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

- 지역 내 수혜 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 보호에 안주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영 혁신, 가격 인하, 품질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기초자치 단체 간의 조밀한 규제는 광역자치 단체 내 인접 시·군·구 소재 업체의 상호 진입을 제한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 후생을 침해함.

□ 개선 권고 내용

-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 폐지, 존치 불가피 시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함.

붙임. 개선권고 대상 지자체 현황

분야별 단체별	건설조례		LED조례		문화예술조례		단체별 합계		
	본청	기초	본청	기초	본청	기초	본청	기초	합계
광역 자치 시	서울	1						1	1
	부산	1					1		1
	대구	1		1			2		2
	인천	1	1				1	1	2
	대전	1					1		1
	광주	1		1			2		2
	울산	1		1			2		2
	세종	1					1		1
광역 자치 도	강원	1	18				1	18	19
	경기	1	23				1	23	24
	경남	1	15	1			2	15	17
	경북	1	17	1			2	17	19
	전남	1	3	1			2	3	5
	전북	1	6	1			2	6	8
	제주	1				1		2	2
	충남	1	14	1			2	14	16
	충북	1	11					1	11
합계	16	109	8		1		25	109	134

[붙임 2]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
----------	-----

제출년월일 : 2024. 5. 3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의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으로 사업자 경쟁유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9. ~ 2024. 4. 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568호, 건설과-9954(2024. 4. 8.)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5447(2024. 4. 3.)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5447(2024. 4. 3.)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위원회 성별균형 참여) 반영
[가족복지과-12384(2024. 4. 4.)호] , [건설과-9586(2024. 4. 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실-7724(2024. 5. 17.)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8095(2024. 5. 24.)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u>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u>각종</u> ----- ----- ----- ----- ----- ----- -----.</p>
<p>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p>	<p>제7조(구성) ① ----- ----- ----- ----- --. <u>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장 오현웅
연락처	(033) 330 - 2406